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검 토 보 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4억 7천 1백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억 4천 9백만원 대비 27.4% 감액된 수준이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5억 9천 9백만원 대비 21.3%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648,873	598,973	471,288	△177,585	△127,685	△27.4%	△21.3%	
행정관리	소 계	648,873	598,973	471,288	△177,585	△127,685	△27.4%	△21.3%
	행정운영경비	140,854	125,854	131,992	△8,862	6,138	△6.3	4.9%
	재무활동	-	-	-	-	-	-	-
	사업비	508,019	473,119	339,296	△168,723	△133,823	△33.2%	△28.3%
교 부 금	-	-	-	-	-	-	-	

○ 202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648,873	598,973	471,288	△177,585	△127,685	△27.4%	△21.3%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08,019	473,119	339,296	△168,723	△133,823	△33.2%	△28.3%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41,100	31,200	28,220	△12,880	△2,980	△31.3%	△9.6%
고충민원 조사 처리	41,100	31,200	28,220	△12,880	△2,980	△31.3%	△9.6%
시민참여 활성화	359,209	349,209	180,423	△178,786	△168,786	△49.8%	△48.3%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41,600	41,600	35,500	△6,100	△6,100	△14.7%	△14.7%
공공사업 감시평가	79,000	79,000	108,800	29,800	29,800	37.7%	37.7%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공사업 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38,609	228,609	36,123	△202,486	△192,486	△84.9%	△84.2%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07,710	92,710	130,653	22,943	37,943	21.3%	40.9%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07,710	92,710	111,733	4,023	19,023	3.7%	20.5%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	18,920	18,920	18,920	-	-
행정운영경비	140,854	125,854	131,992	△8,862	6,138	△6.3%	4.9%
기본경비	140,854	125,854	131,992	△8,862	6,138	△6.3%	4.9%
기본경비	140,854	125,854	131,992	△8,862	6,138	△6.3%	4.9%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가. 세입예산 편성의 필요성

- 위원회에서는 2021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나, 세입이 매년 징수되고 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소액이라 하더라도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3년간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없이 수납 발생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그외수입 (224-06)	2020	-	458	458	
	2019	-	10,256,380	5,128,190	5,128,190
기타이자수입 (216-06)	2018	-	60,200	60,200	-
시·도비반환금수입 (224-04)	2018	-	154,000	154,00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4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 세출예산 검토

-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6억 4천 9백만원) 대비 27.4%(1억 7천 8백만원) 감액한 4억 7천 1백만원 수준임.

※ 2020년도 최종예산(5억 5천 9백만원) 대비 21.3%(1억 2천 8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전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공공사업 감시평가”(3천만원)이고, 주요 감액 사업은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2억 2백만원)이며, 신규사업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1천 9백만원) 사업이고, 폐지 사업은 없음.

가. 고충민원 조사 처리

-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은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민원배심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4천1백만원) 대비 31.3%(1천 3백만원) 감액한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3천 1백만원) 대비 9.6%(3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고충민원 조사 처리”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1,100	(x-) 31,200	(x-) 28,220	(x-) △2,980	(x-) △10
사무관리비	(x-) 23,100	(x-) 13,200	(x-) 14,820	(x-) 1,620	(x-) 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8,000	(x-) 18,000	(x-) 13,400	(x-) △4,600	(x-) △26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2,500천원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1,920천원
	- 강사료 350,000원*2명*1회 = 700천원	- 강사료(2시간 기준) 360,000원*2명*1회 = 720천원
	- 교재비 6,000원*300부*1회 = 1,800천원	- 교재비 6,000원*200부*1회 = 1,2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 20,6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 12,900천원
	- 배심원 등 회의참석수당 150,000원*4명*16회 = 9,600천원	- 배심원 등 회의참석수당 200,000원*4명*8회 = 6,400천원
- 배심원 등 자료검토수당 100,000원*4명*16회 = 6,400천원	- 배심원 등 자료검토수당 100,000원*4명*8회 = 3,200천원	
- 주배심수당 100,000원*1명*16회 = 1,600천원	- 주배심수당 100,000원*1명*8회 = 800천원	
- 배심원 역량강화 3,000,000원*1회 = 3,000천원	- 그림자배심원 수당 200,000원*4명*3회 = 2,400천원	
		- 현수막 등 소모품 구입비 100,000원*1회 = 100천원
증감사유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증액(350천원→360천원) ※'20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일반1급(기본 1시간 240천원, 매시간 초과 120천원) - 최근 민원배심제 개최 추이('17년 24회→'18년 15회→'19년 6회)를 고려하여 횟수 감소(16회→8회) -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상승액(2시간 이상 200천원) 반영(2021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잠정기준, p.176) - '배심원 역량강화'를 '그림자배심원 수당'이라는 구체적 명칭으로 변경 및 금액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11,000,000원 = 11,000천원	○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7,400,000원 = 7,4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7,000,000원 = 7,0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6,000,000원 = 6,000천원
	증감사유	
부서별 한도액으로 조정		

- 본 사업의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보면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교육’의 경우 예산(250만원) 대비 28.4%(709천원) 초과 사용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음에도 2021년에는 오히려 23.2%(5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부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민원배심제 운영 횟수를 7회 개최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당초예산(2,060만원) 대비 48.1%(990만원) 감액조정한바 있으며, 민원배심제 운영횟수를 전년(16회) 대비 절반(8회)으로 축소하는 예산을 편성한바 있음.

〈 2020년 5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23,100	13,200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500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500
	-강사료(350천원×2명×1회) =700	-강사료(350천원×2명×1회) =700
	-교재비(6천원×300부×1회) =1,800	-교재비(6천원×300부×1회) =1,800
사무관리비	○민원배심제 운영 =20,600	○민원배심제 운영 =10,700
	-배심원 등 회의참석수당 (150천원×4명×16회) =9,600	-배심원 등 회의참석수당 (150천원×4명×7회) =4,200
	-배심원 등 자료검토수당 (100천원×4명×16회) =6,400	-배심원 등 자료검토수당 (100천원×4명×7회) =2,800
	-주배심수당(100천원×1명×16회) =1,600	-주배심수당(100천원×1명×7회) =700
	-배심원 역량강화(3,000천원×1회) =3,000	-배심원 역량강화(3,000천원×1회) =3,000

- 최근 3년간 민원배심제 운영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민원배심제 운영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2020년 10월말 현재 2회 개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1,070만원, △990만원)에도 불구하고 약 22.5%의 집행잔액(464만원)이 발생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바, 민원 배심제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 확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민원배심법정 접수 및 개최 내역 〉

(2020. 9월 현재)

구 분 연도별	접수 안건*	개최 안건 (회의 횟수)	처리 결과		진행중	이행 현황	
			권고	기각		이행	미이행
계	16	15(24)	12	3	-	10	1
2020년	3	<u>2</u> (3)	2	-	-	1**	-
2019년	4	4(6)	4	-	-	4	
2018년	9	9(15)	6	3	-	5	1

* 접수(고충민원 중 발굴 건 포함) 안건 수에는 불개최 결정된 안건수도 포함,
2020-2안건의 경우 민원배심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불개최 결정

** 2020-3안건 '20.9.18.자로 권고 시행하여, 처리기관 '20.10.19.까지 이행현황 제출 예정

- 한편, 새로 '그림자배심원 수당'(24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민원배심제 개최 건수 급감에 따른 배심후보단의 배심제 참여 기회가 미미하여, 실제 민원배심제 개최 시, 배심후보단 일부를 모의 참여 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민원배심제 운영 실적 부족에서 기인하는 궁여지책이라고 할 것인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배심원후보단 구성 〉

계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참여 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민배심원	
				자치구 추천	인터넷 신청
89	6	35	21	25	2

나.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 본 사업은 감사·조사 활동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하여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7%(610만원) 감액한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없음.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1,600	(x-) 41,600	(x-) 35,500	(x-) △6,100	(x-) △15
사무관리비	(x-) 25,600	(x-) 25,600	(x-) 19,500	(x-) △6,100	(x-) △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6,000	(x-) 16,000	(x-) 16,000	(x-) 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11,100천원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10,5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7명*6회 = 6,3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00,000원*7명*5회 = 7,0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7명*6회 = 4,2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7명*5회 = 3,500천원
	- 회의운영 소모품 구입 100,000원*6회 = 600천원	
○ 감사·조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 14,500천원	○ 감사·조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 300,000원*3명*10회 = 9,000천원	
- 전문가 참여수당 250,000원*3명*10회 = 7,500천원		
- 주민감사 20주년 토론회 7,000,000원 = 7,000천원		
	증감사유	
	- 주민감사 20주년 토론회는 '20년도에 한하여 실시하여 미편성(△7,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상승액(2시간 이상 200천원) 반영(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p.17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주민감사 업무추진 16,000,000 = 16,000천원	○ 시민·주민감사 업무추진 16,000,000원 = 16,000천원

○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청구 시 청구 요건 심사 및 청구인 명부의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수행하는 법정¹⁾ 위원회로, 13명(외부 10, 내부 3)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참조

□ 사업내용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구성인원 : 13명(외부 10명, 내부 3명), 임기 2년
 - 기능
 -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에 적힌 유효서명 확인
 -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등
- ※ 2020년 예산사업설명서 18페이지

※ 2021년도 예산사업설명서 18페이지

- 최근 3년간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운영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2020년 9월말 현재 개최실적도 4회 개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3년간 주민·시민감사 실적 〉

연도별	합계	완료			각하 등	비고 (다음연도 이월)
		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2020	5	4	3	1		
2019	18	10	2	8	4	
2018	16	7	5	2	4	

- 집행잔액 발생 현황 또한 2018년 39.1%(630만원), 2019년 58.2%(937만원)에 이어 2020년 10월말 현재 73.8%(2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편성예산 감액의 필요성 검토 및 위원회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시민감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내역 〉 (단위: 건)

연도별	회차	회의일	회의안건	참석자	처리결과
2020	1	2.13.	○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2	4. 9.	○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위탁단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2019	1	1. 30	○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2	8. 19	○ 도로점용허가 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발언 관련 주민감사	김선중 위원장 외 5	각하
	3	11.21.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김선중 위원장 외 5	수리
2018	1	3. 23.	○ 2016·2017년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2	6. 7.	○ 송파구 석촌시장 LED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3	9. 14.	○ 동작구 동작대로 문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4	10. 25	○ 구로구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8	수리
5	12. 6	○ 강동구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강동구립테니스장 이전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일부수리	

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 본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감사·시민참여옴부즈만이 중점사업 감시 및 입회활동을 통하여 청렴계약 이행 여부 및 부조리 사항 등을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7천 9백만원) 대비 37.7%(2,980만원) 증액한 1억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없음.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9,000	(x-) 79,000	(x-) 108,800	(x-) 29,800	(x-) 38
사무관리비	(x-) 67,000	(x-) 67,000	(x-) 96,800	(x-) 29,800	(x-) 4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2,000	(x-) 12,000	(x-) 12,000	(x-) 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000원*35명*8회 = 42,000천원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200,000원*35명*10회 = 70,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000원*35명*4회 = 21,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000원*35명*4회 = 21,000천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000,000원*2회 = 4,000천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000,000원*2회 = 4,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례집 제작 18,000원*100부 = 1,800천원
	증감사유	
	- 공공사업 현장감시(입회) 활동실적 증가로 참여횟수 상향 ※ '18년 목표 270건 / 실적 385건 → '19년 목표 372건 / 실적 478건 -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상승액(2시간 이상 200천원) 반영(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p.176) -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례집 제작' 신규 편성(1,8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000,000원 = 12,000천원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000,000원 = 12,000천원

- 동 사업은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7명)과 시민참여 옴부즈만(위촉직, 35명)을 6개 분야로 나누어 현장감시와 입회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의 전년(4천2백만원) 대비 66.7%(2천8백만원) 증액(7천만원)과,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례집 제작'에 1천 8백만원을 신규편성함에 따른 것임.

□ 사업내용

○ 추진인력

-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구성(위촉직)
 -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복지, 도시안전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대상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및 보조금 수령기관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활동내용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 및 부조리 사항 발견 시 감사 추진
- 시정참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자문역할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연2회) 및 토론회(연4회) 추진

○ 본 사업과 관련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9월말 현재 중점감시 활동은 목표 121건에 실적은 63건(52.1%)으로 나타나, 매년 연말에 몰아서 활동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장감시 이후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조치한 실적 또한 3년째 연도별 1건에 그치고 있음.

〈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 실적 〉

연도별	구분	목표	활동현황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0. 9월	계	401	321(80%)	26	153	75	51	16
	중점감시	121	63(52%)	16	14	7	13	13
	입회활동	280	258(92%)	10	139	68	38	3
2019	계	372	478(128%)	27	244	74	105	28
	중점감시	122	112(92%)	21	26	9	30	26
	입회활동	250	366(146%)	6	218	65	75	2

〈 현장감시 이후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감사한 사례 〉

년도	감 사 명	감 사 내 용	조치사항
202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지원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보조사업 관리태만 및 회계관리 소홀이 발견되어 직권감사 - 보조사업 관리태만 - 회계관리 소홀	감사진행중
2019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적정성 관련	승강장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29역)에 대한 용역시행계획,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입찰, 발주,계약 등의 과정에 문제점 발견되어 직권감사 - 부적정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제도 개선 권고	-심사결과 검증과정 보완과 이의제기 절차 신설 · 기관주의 1, 권고 1
2018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 수행 관련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제3자에 의한 감시기능 부재로 공사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직권감사 - 직접감독(자체감리) 시행의 법적근거 확인 - 공종별 업무수행 과정 및 절차 이행 여부 등	- 직접감독 업무수행 제도개선 등 · 기관주의 1, 권고 3

- 2019년도 연말 집중활동 내역을 보면, 122건 목표 중 93건(76.2%)을 4/4분기 중에 처리하였고, 이 중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건이 48건(51.6%)에 달하고 있는바 연말 몰아치기식 업무 수행으로 부실한 감시활동이 반복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0년도 9월말 현재 52.1% 중점감시 이행 완료.

- 그럼에도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횟수를 2회(8회→10회) 늘려 관련 수당을 1천 8백만원 증액(4천 2백만원→7천만원) 편성하고 있어,
- 편성예산의 감액 필요성 검토와 함께, 연말에 집중된 목표달성 추진으로 인한 감시활동의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0년도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

- 본 사업은 2020년 11월 준공한 감사청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감사청구와 공공사업 감시·평가 시스템을 통한 공공사업 감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 전년 당초예산(2억 3,861억원) 대비 84.9%(2억 249만원) 감액한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2억 2,861억원) 대비 1억 9천 2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00,410	(x-) 190,410	(x-) 36,123	(x-) Δ154,287	(x-) Δ81
사무관리비	(x-) 1,410	(x-) 1,410	(x-) 19,703	(x-) 18,293	(x-) 1,297
공공운영비	(x-) 0	(x-) 0	(x-) 16,420	(x-) 16,420	(x-) 0
전산개발비	(x-) 199,000	(x-) 189,000	(x-) 0	(x-) Δ189,000	(x-) Δ1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8명 = 1,200천원	○ 통신사 인증비용 600,000원*1식 = 600천원
	○ 조달수수료 210,000*1식 = 210천원	○ 조달수수료 103,000원*1식 = 103천원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 19,000천원 - 인증소프트웨어 구매 19,000,000 = 19,000천원
증감사유		
- 본인확인을 위한 통신사 인증비 및 조달수수료 편성 - 감사청구의 전자서명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공공운영비		○ 시민참여활성화 및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12,774,111원*1식 = 12,775천원
		○ 시민참여활성화 및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3,644,570원*1식 = 3,645천원
	증감사유	
온라인 전자서명 시스템 등 연계시스템 운영과 누리집의 시의적절한 홍보와 이벤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전산개발비	○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활성화 시스템 개발비 170,000,000원*1식 = 170,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 정보화사업 감리비 29,000,000원*1식 = 29,000천원	
	증감사유	
	시스템 구축완료('20.10월)로 전산개발비 불요	

- 먼저, 전년도 사업비와 관련하여 예산 사업설명서(당초 2억원, 최종 1억 9천만원)와 예산안에 대한 의원요구자료 제출 자료(당초 2억 4천만원, 최종 2억 3천만원)가 서로 상이한바,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분석을 위한 사업설명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안 자료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감사청구시스템을 통한 시민·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등록시스템의 활용과 청구인 전자서명 체계 운영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유통하게 되는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비책 마련에 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 본 사업은 위원회 홍보 및 위원과 조사관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한 토론회 등을 위한 사업으로,
 - 전년 당초예산(1억 8백만원) 대비 3.7%(4백만원) 증액한 1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9천 3백만원) 대비 20.5%(1천 9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07,710	(x-) 102,710	(x-) 111,733	(x-) 9,023	(x-) 9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x-) 7,250	(x-) 7,250	(x-) 7,373	(x-) 123	(x-) 2

사무관리비	(x-) 54,500	(x-) 54,500	(x-) 41,000	(x-) Δ13,500	(x-) Δ25
행사운영비	(x-) 0	(x-) 0	(x-) 32,400	(x-) 32,400	(x-) 0
국외업무여비	(x-) 15,000	(x-) 10,000	(x-) 0	(x-) Δ10,000	(x-) Δ100
특정업무경비	(x-) 30,960	(x-) 30,960	(x-) 30,960	(x-) 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보수 = 7,250천원 - 인부임 10,523원*14시간*4주*1명*12월 = 7,072천원 - 고용보험료 7,071,456원*1.65% = 117천원 - 산재보험료 7,071,456*0.85% = 61천원	○ 초단시간근로자보수 = 7,373천원 - 인부임 10,702원*14시간*4주*1명*12월 = 7,192천원 - 고용보험료 7,191,744원*1.65% = 119천원 - 산재보험료 7,191,744*0.85% = 62천원
	증감사유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상승분 등 반영	
사무관리비	○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4,000,000원*2회 = 8,000천원 ○ 대시민 정보제공 = 46,500천원 - 홍보물 제작 2,000원*10,000매 = 20,000천원 -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 10,000,000*1식 = 10,000천원 - 감사사례집 제작 16,500원*1,000권 = 16,500천원	○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4,000,000원*2회 = 8,000천원 ○ 대시민 정보제공 = 33,000천원 - 홍보물 제작 2,000원*9,000매 = 18,000천원 - 연차보고서 제작 12,500원*1,200권 = 15,000천원
	증감사유	
	- 대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연차보고서 제작비 편성 - 감사사례집 격년 제작예정으로 2021년도 예산 미편성	
행사운영비		○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대토론회 = 32,400천원 - 토론회 운영 15,000,000원*1식 = 15,000천원 - 발제 및 토론 수당 240,000원*10명 = 2,400천원 - 자료집 제작 20,000원*200권 = 4,000천원 -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 1,000,000원*1식 = 1,000천원 -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영상 제작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증감사유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대토론회 추진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국외업무여비	○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견학 5,000,000원*3명 = 15,000천원	
	증감사유	
	'21년도 신규사업인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에 편성	
특정업무경비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 30,960천원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 30,960천원
	- 4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4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5급 이하 80,000원*31명*12개월 = 29,760천원	- 5급 이하 80,000원*31명*12개월 = 29,760천원

○ 본 사업 중 신규로 편성한 행사운영비(3천 2백만원)는 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아 전국 옴부즈만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추진 (2021.6.)하기 위한 것임.

※ 전국 옴부즈만,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

- 다만, 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워크숍’(연2회)과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연4회)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워크숍, 토론회, 대토론회 등의 내실있는 개최가 요망 된다고 할 것임.

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본 사업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2020.5. 정회원)을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 옴부즈만과 교류 활동을 통한 시민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천 9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세계옴부즈만협회 개요

- 설립시기 :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1978년 창설
- 설립목적 :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세계적 발전 도모 및 전 세계옴부즈만들간 정보·경험 교환

- 사무국 :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소재
- 참여현황 : 전세계 118개국 215개 기관, 우리나라 5개 기관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8,920	(x-) 18,92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4,000	(x-) 4,000	(x-) 0
행사운영비	(x-) 0	(x-) 0	(x-) 1,920	(x-) 1,920	(x-) 0
국외업무여비	(x-) 0	(x-) 0	(x-) 10,000	(x-) 10,000	(x-) 0
국제부담금	(x-) 0	(x-) 0	(x-) 3,000	(x-) 3,000	(x-) 1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제12차 IOI총회·국제컨퍼런스 통역비 500,000원*1명*5일 = 2,500천원
		○ IOI연례보고서·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500,000원*3회 = 1,500천원
	증감사유	
	- IOI 가입에 따른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예산 편성(통역비, 번역비)	
행사운영비		○ 국내 IOI회원기관 세미나 개최 = 1,920천원
		- 발표비 360,000원*2명 = 720천원
		- 자료집 제작비 20,000원*50권 = 1,000천원
		-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비 200,000원*1회 = 200천원
	증감사유	
	- 국내 IOI 회원기관 간 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국외업무여비		○ 제12차 IOI 총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5,000,000원*2명 = 10,000천원
	증감사유	
	- 제12차('21.5월) IOI 총회 국제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국제부담금		○ IOI 연회비('20.7.1.~'21.6.30.) 600,000원*1회 = 600천원
		○ 제12차 IOI총회·국제컨퍼런스 참가비 2,400,000원*1회 = 2,400천원
	증감사유	
	- IOI 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를 위한 예산 편성 : 375유로(≒500,925원)	
	- IOI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가비(2명) : 1,680유로(≒2,244,144원)	
	※ 최근 2년간 평균 환율(1유로=1,335.80원)과 환율변동, 외국은행 수수료 등 고려	

-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현황을 보면, 현재 118개국 215개 기관이 가입되어 유럽 지역(49개국)이 가장 많고 국내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미 5개의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바,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옴부즈만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도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정회원, 1996년 가입),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준회원, 2012년 가입),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정회원, 2016년 가입), 시흥시 호민관(준회원, 2016년 가입), 부천시 옴부즈만(준회원, 2019년 가입)

- 다만,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서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제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예산의 '국제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법률지원담당관 사전검토 자료 첨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49호, 2019.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

시의회동의 필요여부 사전검토

《 '20. 11. 16. 법률지원담당관 》

검토 대상 협약(안)

- 의뢰부서는 2020. 3. 세계옴부즈만협회(이하 'IOI')에 협회 가입 신청을 하였고 2020. 5. 18. IOI 이사회로부터 회원자격 승인을 받아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음. 우리시는 IOI 가입으로 연회비 및 행사 참가비를 납부할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예산안에 편성되었음.
- 따라서 검토 대상 협약(안)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뢰부서는 IOI 가입 및 연회비 납부 등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필요한지 문의함.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IOI 가입이 ‘협약’인지 여부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협약’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하고,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함.

- ‘협약’의 사전적 의미²⁾를 살펴보면, 협약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단체(사적 단체, 공공단체, 국가)인 경우의 계약에 관하여 쓰이고 그 법적 성격은 계약과 다르지 않음.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임.
-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를 이루어 국내법이나 국제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합치와 관련 법령상 필요한 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심사 대상인 ‘협약’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한 것뿐이므로 가입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을 ‘협약’으로 볼 수도 없음.

□ 결 론

- 따라서 IOI 가입만으로는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른 ‘협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 ‘예산 외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2) 법제처 법령용어사전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p1=&lsTrm=%ED%98%91%EC%A0%95%ED%98%91%EC%95%BD%EA%B3%84%EC%95%BD%EC%95%BD%EC%A0%95&pg=6&q=%EA%B3%84%EC%95%BD&fsort=10&outmax=50&seq=39>